

제71회 제1차 목포시의회의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9월 18일 상오 10시 4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9월 18일 하오 1시 3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전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70회 제1차 회의록 통과
- 2) 제70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3)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 목포 상공회의소
 - 이로면 의회
- 4) 각 분과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

◆ 부의안건

- 1) 목포시 소방세 조례 개정의 건
- 2) 단기 4290년도 제5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출 경정 예산안
- 3)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건설 자금 특별회계 조례안
- 4)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건설 자금 특별회계 예산안
- 5) 단기 4290년도 제4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6) 시 의회부의장 선거의 건
- 7) 각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 협의사항

목포시 제1회 공채발행의 건

8. 토의사항

◎ 제70회 제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 1) 목포상공회의소 제출 진정서
- 2) 이로면 의회 제출 진정서

◇서기 박 찬 대 낭독

◇김 창 희 의원

- 목포 상공회의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의 발언에 이어 관계당국인 해무청, 경찰서 등과 교섭하여 당 시의회에서 적극 철거 진정을 할 것을 강조하였음

◇강 영 락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발언을 대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본 건 의사일정을 변경 정식 상정할 것을 동의하다.

◇김 일 섭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될 줄 믿는다.

- 출입문의 목책을 철거한다면 선착장의 혼잡과 무임 승선 해상사고 방지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숙고하여 처결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다.

◇김 성 균 의원

- 소개의원의 발언에 목적을 설치할 당시의 목적이 치안 유지상이라 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목적이 개재된지도 모르는 것이니 일응 내무위원회에 회부심의케 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다.

◇김 경 인 의원

- 소개의원으로서 김창희 의원의 발언에 찬조발언이 있었음

◇의장 김 삼 성

-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 이로면 의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정 응 표 의원

- 인분요금을 일시에 급작히 배액 인상함으로서 여사한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 본건 규칙제정을 어디까지나 집행부권한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전이나 혹은 사후에라도 의결부에 하등의 연락이라도 있었더라면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이라도 할 수 있었든 것이다. 이로면 측과도 사전연락을 하여 두는 것이 순서에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초대 의회시부터 노력하여온 이로면 병합 문제에 대하여 현금은 좌절상태에 있으나 삼학도 및 갓바위 공사의 완성후의 대목포시를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이로면 확장설이 논의된다고 생각하면 이처럼 문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니 본 건 심사숙고하여 환원조치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

◎ 각 분과위원회의 상황보고

◇상임분과위원회 김 남 진 의원

-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위원 성원미달로 인하여 심의를 못한채 보고하게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위원회 소집되었든 날은 본 의원이 최종시간까지 머물러 있었으나 참석한 분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보고를 지연시킬 때에는 그 안건을 철회하여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니 본조문을 적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재청---3청이 있었다.

◇김 상 태 의원

- 매사 순서가 있는 것으로서 골자는 부의장 선거 지연에 있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김남진의원의 발언도 일리가 있는 것이나 그 조문은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하였을 적의 말일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그 날 우리 산업위원이 불참하였든 것은 고의적일 불순한 동기에서 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주장함과 동시 분과위원장 우선 선거를 기도하였든 것인데 그 책임전가를 우리 몇몇 의원에게 돌린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김 상 태 의원

- 위원회 조례 제15조는 이유가 없을 적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든 것이다.

◇김 남 진 의원

- 강 의원은 투쟁을 좋아하는 발언이었으며 도전적인 발언을 삼가하여 주기 바란다. 본 의원이 책임전가 운운의 발언은 언어도단이며 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였을 따름이다.

◇김 성 균 의원

- 부의장선거 지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전을 우선 심의하자는 것이다.

- 김남진 의원의 동의에 4청하면서 그 관계를 결정짓고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현재 산업위원이 4인이니 1인을 타 의원으로 증가 심의케 할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경 인 의원

- 8월 29일로서 임기 만료가 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천연시킨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타안건 보다 경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정 응 표 의원

-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간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나 이는 사무적이고 규칙적이고 순서적이어야 할 것이다.

- 초기의장 선거시 불신임문제와 재선 문제등 복잡한 경험을 상기할 때 향후 1년 간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회운영을 할려면 금반의 의장 선거와 같이 부의장 선거도 이러한 분위기를 양성하여야 될 줄 생각한다.

◇김 남 진 의원

- 현하안 당한 문제로서 의장단선거와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전중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은 중앙 혹은 도에서의 보조를 추가경정한 것으로서 소정기일내 예산 조치가 안되면 환원하여야 될 성질이 이것이니 이를 천연시킴으로서 피해를 입은 것은 시민 일 것이다.

- 이정권, 김일섭, 천철수, 임석희 의원 퇴장하다.

(11시 55분

현재)

◇강 영 락 의원

- 몇 산업위원이 마치 징계 대상이나 된 것 같아서 불유쾌하기 짝이 없다. 불구자의 의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안전회부의 자격조차 없다고 보아지는 것이며 의장선거는 만장일치로 하면 당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 우리 산업위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무래 시민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우리 야당 의원은 차라리 옥쇄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의를 부르짖질 것이고 퇴장 전술도 안쓰러니와 이러한 의회를 해산하여 명량한 재선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 김경인, 강영낙, 조양순, 김상태, 박두순 의원 퇴장하다.

(하오 12시 5분 현재)

◇의장 김 삼 성

- 한시간 회의 중지 선언하다.

- 성원미달로 유회 선언하다.

(하오 2시 3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9월 20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김 상 대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71회 제2차 목포시의회의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9월 20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9월 20일 하오 2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석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 이정권 지참, 천철수 지참 의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제71회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의장 김 삼 성

- 거반 제1차 회의시 김남진위원의 동의를 성립되었으나 유회로 인하여 표결 불능이었습기 해 동의를 표결 실시를 선언하다.

- 김남진위원 동의 표결 결과 재석 14명중 가 8표 가결되다.

◇강 영 락 의원

- 방금의 표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어 불법결의가 아니겠는가

◇의장 김 삼 성

- 동일회기이니까 이에 저축을 안 받는다.

◎ 각 분과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문교사회위원회 명 남 철 의원

- 과반 제안하였던 안건은 당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를 보았었으나 상부의 지시에의하여 각기 경정조치 되었다 하오니 다시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다.

◇내무위원장 김 일 섭 의원

-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소방세 조례 및 수특경정 예산안은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

- 이정권 의원 참석 재석 15명

◇김 창 희 의원

- 당지 유일의 자랑인 해양고등학교는 현금 존폐 사태등불미 시러운 사태가 야기되었는바 그 원인은 재정 빈약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점인것이다. 이에대한 국고보조교섭을 하기 위하여 당 시의회의 대표 위원 1인을 파견할 것과 수일 후 내목하게 되는 신성모 선생과의 교섭위원 3인정도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하다.

- 재청---4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학교측에서 방청석에 내림하신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증언 청취를 하여 주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명 남 철 의원

- 참고로 발언하는 바이나 어느 의원이 중앙에 파견되든지 91년도 예산 편성면을 사전에 탐지하고 교섭에 착수하여야 될 줄 믿는다.

◇정 응 표 의원

- 이는 금일에야 발단된 문제가 아니고 당 시의 중대 숙제로서 현금 그 존폐여부의 기로에 서 있다 함은 유감된 일이라 하겠으며 타 도시에 비하여 교육기관이 희소한 당시의 형편으로 타 시에 만약 이 학교를 뺏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 여하한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당 시에 존치토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빈약한 예산이나 집행부에서 백만원가량 넘출할 방도로 강구하여야 될 줄 믿는다.

◇해양고등학교 김 용 진 기성회장

- 당해학교의 실정에 대한 증언이 있었음

- 김창희 의원 동의 표결 결과 재석 15명중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서울 파견위원은 명남철 의원, 신성모씨 응대위원으로 박두순, 김창희, 김경인 의원을 지명하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 의결부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전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중앙의 예산 통과를 통용하는 의미에서 당시 의회의 결의로써 건의문을 작성 대통령, 재무부, 국회 의장, 예산위원회 등에 제출할 것을 동의한다.

- 문안작성은 의회간사에게 일임토록함.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 이 학교는 도내 수산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 운영면에 협조하여 왔던 것으로서 목포 어업조합에 관련되는 90만환조도 목포해무청장을 방금 선정된 세 위원으로 하여금 방문케 하여 해결토록 노력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의회 해산 결의안 심의의 건

◇서기 박 찬 대

- 주문 낭독

◇의장 김 삼 성

- 본 건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회송된 안건을 먼저 의결한 뒤에 심의 토록 할 것을 선언하다.

◎ 목포시 소방세 조례 판정의 건

◇김 일 섭 의원

- 본 건 변방동에도 소방의 혜택을 공여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소방세 조례 통과 조건부 내용 설명하다.

◎ 단기 4290년도 제5회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출 경정 예산안

◇김 일 섭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특별회계 조례안

◎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차입안

◎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특별회계 예산안

◇사회과장 박 규 성

- 제안 이유 설명하다.

◇의장 김 삼 성

- 3건 공히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선언하다.

◎ 단기 4290년도 제4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하다.

◇의장 김 삼 성

-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방금 수(몇)의원의 발의로 당시 의회 해산 결의안이 제안된 것 같으나 이렇게 되면 부의장선거와 각 상임위원장 선거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상 해산안이 의결된다면 선거기에 임하여 그 동안의 의회공백상태를 여하히 할 것인가

- 금일까지라도 우리 의회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회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건은 의결하여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니 즉시 본 회의를 중지하고 각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종료 후 본회의 속개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키 위하여 본회의 중시 선언하다.

(상오 11시 40분 현재)

- 김경인, 박두순, 조양순, 이정권, 김상태, 임석희, 강영락 의원 불참 재석 8명

천철수 의원 참석 재석 9명

(하오 1시 15분 현재)

◎ 각 상임위원회 개최함

◇의장 김 삼 성

-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 선언하다.

(하오 1시 50분 현재)

◎ 각 분과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문교사회위원회 명 남 철 의원

-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집행부로부터 제안한 세건은 각각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아 내무위원회에 넘겼습니다(단 이르면 의회 진정서는 신년도에 고려할 것을 전제)

◇산업위원회 김 남 진 의원

- 본 산위 관계 추경 예산도 거개 보조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이기 때무레 원안 무수정 통과를 보아 내무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내무위원회 김 일 섭 의원

- 산업 문사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 및 내무위원회 소관 각 안건을 원안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

◎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특별회계 조례안

◇김 성 균 의원

- 본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심검토한 것이니 원안 무수정통과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차입안

◇김 상 대 의원

- 본 건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특별회계 예산안

◇김 창 희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제4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명 남 철 의원

- 본 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심 검토한 것으로서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건은 이로써 원활리에 의결이 종료되었으나 중대의 안인 부의장 선거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수의원의 퇴장으로 말미암아 정족수 미달로 실시불능이니 차기회의에 넘길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는 요지의 폐회사가 있었음
(하오 2시 3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 함

단기 4290년 9월 21일

시의원 김 일 섭

시의원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